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수요 급증에 따라,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본청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정원 총수 조정 (안 제2조)

- (종전) 정원의 총수 633명 → (개정) 642명 (증 9명)
- (종전) 집행기관의 정원 621명 → (개정) 630명 (증 9명)

나.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(안 제3조 '별표2'.)

- 일반직 공무원
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종 전	1%이내	5%이내	23%이내	29%이내	26%이내	15%이상	1%이내
개 정	1%이내	5%이내	23%이내	29%이내	27%이내	14%이상	1%이내
증/감	-	-	-	-	1	-1	-

다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(안 제4조 '별표3'.)

구 분	합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종 전	633	326	12	135	24	136
개 정	642	335	12	135	24	136
증/감	9	9	-	-	-	-

구분	계	군수	4급	45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전문경력관
종전	633	1	2	2	25	135	177	159	110	2	1	18	1
개정	642	1	2	2	27	138	178	163	109	2	1	18	1
증/감	9	-	-	-	2	3	1	4	-1	-	-	-	-

라. 한시기구인 올림픽운영과의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은 2017.12.31일까지 (부칙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6.01.15~22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,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등 : 해당없음 및 원안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33명”을 “64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21명”을 “63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올림픽추진단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은 2016.12.31일까지로 하고, 올림픽운영과의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은 2017.12.31.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"정원" 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633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21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642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630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2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 율	1%이내	5%이내	23%이내	29%이내	27%이내	14%이상	1%이내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-	100%	6% 이내	94% 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	100%		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42	642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20	620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7	12	2	4	1	8
6급 이하	588	588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공무원 정원 증가(633명 → 642명) 증9명
나. 관련조문 :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, 제4조 별표 3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9명이 증원되고, 공무원 보수는 매년 전년대비 2.8%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
- 2016년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15년 기준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(58,162천원)에 2.8% 인상을 적용

나. 추계 결과 : 2016~2020년까지 총 지출 예상

- 2016년 : 59,791천원 × 9명 = 538,119천원
- 2017년 : 538,119천원 × 102.8% = 553,186천원
- 2018년 : 553,186천원 × 102.8% = 568,675천원
- 2019년 : 568,675천원 × 102.8% = 584,598천원
- 2020년 : 584,598천원 × 102.8% = 600,967천원

다. 재원조달 방안 : 자체재원 및 지방교부세 재원

3. 관련 의견

가.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남 동 선
연락처	(033) 330 -2210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8조(한시정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 된다.

③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

④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~⑦(생략)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